#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(중소기업 특례보증)

# 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30.

**기획행정위원회**
**전 문 위 원**

#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(중소기업 특례보증)

## 1. 제안경과

○ 본 동의안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○ 202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○ 사업목적 :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융자 특례보증 제공

○ 지원대상 :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, 기업형 비제조업

○ 지원내용 : 기업당 최대 3억원 융자 특례보증 지원

○ 출연개요

- 출연금액 : 900백만원
- 출연기관 : (재)경기신용보증재단
- 출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합 계 | 2000-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출연금 | 10,620 | 6,420 | 600 | 700 | 700 | 700 | 700 | 800 |

- 지원실적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2021년 | | 2022년 | | 2023년 | | 2024년 | | 2025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업체수 | 보증액 | 업체수 | 보증액 | 업체수 | 보증액 | 업체수 | 보증액 | 업체수 | 보증액 |
| 중소기업 | 52 | 7,177 | 51 | 7,388 | 44 | 6,627 | 37 | 5,721 | 51 | 8,702 |

## 4. 향후일정

○ 2026. 12. : 2027년도 예산 편성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관련부서 : 지역경제과

## 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7년도 출연금 9억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.

○ 본 사업은 환급형 구조로 운영되며, 출연금의 4배에 해당하는 보증 한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, 출연금 9억 원을 통해 36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확보하고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보증 지원실적은 2025년도 51개 업체, 87억 200만 원이며, 2026년도 상반기에는 44개 업체, 73억 2,600만 원으로, 상반기 보증액이 전년도 연간 실적의 약 84.2%에 이르고 있음. 이러한 지원실적을 고려할 때,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담보 부족에 따른 금융 이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8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규모로, 증액분에 따라 보증 한도가 4억 원 확대되는 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 향후 실제 보증 수요와 기존 출연금의 환급·운용 현황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한 보증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○ 아울러,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보증 및 대출 실행 현황과 출연금 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붙임1 관계법령

### ☑ 「지방재정법」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**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**

### ☑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**제7조(기본재산)**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**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**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②~⑤항 생략

### ☑ 「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

**제20조(경영 지원)**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